

전라북도 공고 제2021-907호

2021년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시행계획 공고

소방청 공고 제2021-86호에 의거 2021년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의 체력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전라북도지사

1.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 합격자 : 581명[별첨]

☐ 채용구분

구분	합계	공개경쟁		경력경쟁										
		화재진압		소방 관련학과		구급		구조	화학	차량 정비	기관 사	건축	정보 통신	회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남	남	남	남	남	남
선발 인원	243	119	6	13	4	43	14	31	3	2	3	2	2	1
합격 인원	581	309	18	39	13	87	30	64	2	2	10	1	6	-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아래 범위에서 합격한 자

구분	공채		경채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 (소수점 반올림)	화재진압(남)	2.6배수	소방관련학과(남) 구급(남), (여)	2배
	화재진압(여)	3배수	구조(남)	
			그 외 분야	3배

II. 체력시험 시행

□ 체력시험 일정 및 장소

- 시험대상 : 총 581명(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시험기간 : 2021. 5. 17.(월) ~ 5. 25.(화) / 6일간 ※ 5.19.(수) 석가탄신일 휴무
- 등록시간 : 오전조 8:00 ~ 8:30 / 오후조 13:00 ~ 13:30
- ※ 등록마감 시간까지 입실완료 (시간 초과 시 입실 절대 불가)
- 시험장소 : 전북도청 지하실내체육관 [붙임1] 참조
- 일정구분 * 체력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시험일	총인원	조	채용분야		대상자(응시번호)	인원
5.17.(월)	40	오전	공채	화재진압(남)	711-011-0005 ~ 711-011-0170	40
	60	오후	공채	화재진압(남)	711-011-0175 ~ 711-011-0481	60
5.18.(화)	40	오전	공채	화재진압(남)	711-011-0486 ~ 711-011-0735	40
	60	오후	공채	화재진압(남)	711-011-0740 ~ 711-011-1054	60
5.19.(수)	석가탄신일(휴일)					
5.20.(목)	40	오전	공채	화재진압(남)	711-011-1057 ~ 711-011-1216	40
	69	오후	공채	화재진압(남)	711-011-1220 ~ 711-011-1554	69
5.21.(금)	39	오전	경채	소방관련학과(남)	합격자 전원	39
	61	오후	공채	화재진압(여)	합격자 전원	18
			경채	소방관련학과(여)	합격자 전원	13
			경채	구급(여)	합격자 전원	30
5.24.(월)	40	오전	경채	구급(남)	711-031-0001 ~ 711-031-0114	40
	68	오후	경채	구급(남)	711-031-0115 ~ 711-031-0234	47
			경채	화학(남)	합격자 전원	2
			경채	차량정비(남)	합격자 전원	2
			경채	기관사(남)	합격자 전원	10
			경채	건축(남)	합격자 전원	1
			경채	정보통신(남여공통)	합격자 전원	6
5.25.(화)	64	오전	경채	구조(남)	합격자 전원	64

○ 응시자 준비물 : 마스크, 응시표*, 신분증**, 운동복***, 운동화****, 필기도구 등

* 응시표 출력 : 필기시험 응시표와 동일(119고시 홈페이지)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모바일신분증 제외)

*** 측정 센서에 영향을 주는 복장 착용 시 시험운영기관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스파이크·축구화 등 신발 바닥면이 돌출되어 실내 마루 및 측정판을 파손시킬 우려가 있는 신발은 착용 불가하며, 실내운동화만 가능

○ 별도시험 : 코로나19 자진신고시스템에 의한 사전 신청자

○ 응시방법 : 코로나19 자진신고시스템 접수(붙임6) → 개별안내

※ 자가격리자 : 2021. 5. 25.(화) 오후 예정 → 별도통보

※ 확진자 : 퇴원 기간을 고려하여 체력시험 기간(~ 6.11.) 중 별도시험 예정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붙임2]

□ 체력시험 측정방법 [붙임3]

□ 도핑테스트 [붙임4]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붙임5]의 복용여부 확인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실시 동의서<서식1>를 체력시험 등록 시 제출

※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서식2>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등록 시)

○ 도핑테스트는 시험 당일 응시인원의 5%를 추첨을 통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며, 체력시험 일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 시료를 채취함

○ 도핑테스트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처리함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판정되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당해시험을 무효 또는 합격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도핑테스트 분석결과 비정상인 응시자의 경우 이의신청 기회 부여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19.1.8)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유발하는 약물은 “감기약(메틸에페드린)”복용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적어도 3일전부터는 감기약 복용에 주의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 합격자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총점의 50% (60점 중 3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발 표 일 : 2021. 6. 15.(화)
- 공고방법 (아래 홈페이지 게재)
 - 소방청 홈페이지(<http://119gosi.kr>), 전북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전북소방본부 홈페이지(<http://www.sobang.kr>)
-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서류제출 등 실시 안내 공고

III.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사항

□ 코로나19 확진환자 ⇨ 시험응시 가능

-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 받을 것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 ⇨ 별도장소에서 시험 실시

- 응시자 중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시험이 가능하며, 아래의 사전신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사전신고 신청절차

- 사전 신청기간 : 2021. 5. 10.(월) 09:00 ~ 5. 24.(월) 24:00까지
 -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 불가
- 신청방법 : 전라북도 시험시행본부 사전 연락 후 (사전 유선신청 반드시 요함),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 연 락 처 : ☎ 063-280-2307
- 제출서류(3부) : ① 신청서[서식3, 4] / ② 격리통지서 사본 또는 의사소견서(확진자)
- 제 출 처 : (이메일) shyguy963@korea.kr 또는 (팩스) ☎ 063-280-2919
- ※ 별도 시험장소 및 응시방법 등은 향후 개별 안내

-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해제확인이 된 경우 시험장에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 시험 당일 고사장 입구에서 발열체크 후 이상 증상이 없는 응시자 ⇨ 체력시험 실시

- 시험장은 마스크(KF80 이상)를 착용한 응시자만 입장 가능하며,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소독 후 시험장 입실하고, 시험중에도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감독관이 응시자를 확인하는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해야 합니다.

- 모든 종목 측정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왕복오래달리기 종목 평가시에만 벗는 것이 허용됩니다. (단, 측정이 종료되면 바로 착용하여야 함)

□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 ⇨ 마지막 순번 조정 후 별도 실시

-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의 경우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문진표를 작성 후 응시여부를 결정하며, 일반 응시자와 이동 동선을 달리하여 마지막 순번으로 조정 후 별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 시험장 입실(퇴실) 시 유의사항(준수사항)

-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아래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행동수칙]

- ▶ 시험장 방역 및 수험생 위생관리를 위해 **시험장은 오전조 08:00부터 오후조 13:00부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 마스크 미 착용 시 출입 불가
-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는 반드시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시험 시간 중, 시험 종료 후 고사장을 벗어날 때 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발열체크 진행에 협조**해야하며, 발열체크 대기 시 **응시자간 안전거리를 최소 1.5m이상 유지**하여 주시고, 방역담당관의 통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방역담당관 문진 후 별도 장소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징후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열체크 후 이상이 없는 수험생은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 후 해당 시험장으로 입실하여야 하며, 화장실 사용 후 재입실시에도 반드시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 후 시험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 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장 환기를 위해 시험 중 창문 등을 상시 개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여 양해바랍니다.

- ▶ 감염방지를 위해 **시험장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휴지, 덧신 등)는 본인의 가방 등에 넣어** 직접 가져가 주시고, 시험장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 ▶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 +120)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응시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IV. 응시자 유의사항

- 신분증 미지참 응시자는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합니다.
 - 인 정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불인정 :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
- ※ 응시표는 「119고시→마이페이지→응시표 출력」에서 가능합니다.
- 체력시험의 모든 종목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하며, 왕복오래달리기 종목에 한하여 마스크 벗는 것을 허용합니다.
- 체력시험 측정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험 중 본인 신체상의 건강상태, 질환, 기타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확진 및 자가격리자는 [붙임6] 안내문에 따라 자진신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한 응시자(본인)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별도 시험을 시행하니 응시자 본인의 응시예정일 전일 24시까지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별도 시험일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 당일 발열 증상(37.5° 이상) 및 호흡기 질환 등 코로나19 유증상자로 판단되는 응시자는 당일 마지막 순번으로 체력시험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장 환기 등 시험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우천, 강풍, 폭설 등에도 시험은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 시험장소 등을 추가로 공지합니다.

- 시험장 물품 파손·훼손 등의 경우 수험생 본인 변상, 시험장은 금연지역으로 흡연 적발 시 법적조치 합니다.
- 체력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복장 및 용모는 시험 운영 과정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용모를 단정히 하고 시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 중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신발 등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장구(기구)만 사용가능합니다.
- ※ 탄마가루는 제공하지 않으며, 사용 또한 금지
- ※ 악력·배근력 종목에서는 시험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반코팅 장갑 사용 가능
- 시험 중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해야 하며,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시험 세부 운영 방법(측정방법, 실력기준 등)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시험운영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촬영을 실시하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종목별 시험 종료 후 폐기합니다.
- 종목별 측정 시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종목을 실시 후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영상 촬영 판독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 제자리멀리뛰기 및 윗몸일으키기 종목은 전자식으로 측정합니다.
-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하거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체력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등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처리하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부상 등의 사유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종목에 응시하지 못하고 귀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전까지 취득한 점수 인정 (응시포기서 작성)
- 대리시험을 의뢰한 사람·응시한 사람, 도핑테스트 비정상 분석결과자 등 부정행위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 채용시험(필기, 체력, 면접 등)

- 문의처 : 전북도청 총무과 공무원채용팀 - 연락처 : ☎ 063-280-2307

[붙임]

※ 응시생은 본 종합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시험에 임해야하며
종합안내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생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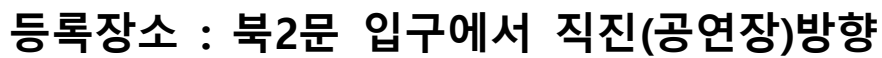
V. 종합안내 및 서식

목 차

1. 체력시험 관련 안내	11
[붙임1] 체력시험 장소	12
[붙임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3
[붙임3] 체력시험 측정방법	14
[붙임4] 도핑테스트 안내문	16
[붙임5]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7
[붙임6] 자진신고시스템 운영 안내문	19
[붙임7]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20
2. 체력시험 제출서식	21
[서식1] 도핑테스트 실시동의서(응시자 전원제출)	22
[서식2]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해당자)	23
[서식3]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해당자)	25
[서식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해당자)	26
※ 서식작성은 [별첨] 서식모음(한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관련 참고사항	27
[참고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28
[참고2]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29
[참고3]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30
[참고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묻고 답하기	31

1. 체력시험 관련 안내

전북도청 지하실내체육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붙임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이하 절사

※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붙임3 **체력시험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 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붙임4 도핑테스트 안내문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절차**

- 시료는 응시자의 소변으로 하고, 시료수집책임관 관리 하에 소변 채취통에 90ml 이상이 되도록 수집 한다.
- 응시자는 시료채취 용기를 직접 선택한 후, 시료수집책임관이 A시료병에 60ml, B시료병에 30ml의 양으로 나누어 넣은 뒤 밀봉하여 응시자가 직접 확인한다.
- 응시자가 시료채취 용기를 선택한 그 시점부터는 시료채취 용기는 응시자 또는 시료수집책임관 입회하에 다룬다.
- 시료채취용기의 관리번호와 성명, 응시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등 개인식별번호는 관련 서류에 기재하고, 응시자가 확인·서명을 한다.
- 시료수집책임관은 소변시료가 분석하기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채취용기에 남은 소변의 비중을 확인하고, 적정비중 이하인 경우에 응시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보관운송책임관이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된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전라북도내 서면으로 통보되며, 분석결과 비정상(양성)이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치료목적 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의견제출시 :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 B시료 분석 요청시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B시료 분석결과가 A시료의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의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한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붙임5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① 금지약물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드로스타논(drostanolone) ▶ 메티놀론(methenolone)
- ▶ 메타스테론(methasterone)
 - ※ 17β -hydroxy- 2α , 17α -dimethyl- 5α -androstan-3-one
- ▶ 스타노졸롤(stanozolol)
- ▶ 1-테스토스테론(1-testosterone)
 - ※ 17β -hydroxy- 5α -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클렌부테롤(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hydrochlorothiazide)
- ▶ 클로로티아지드(chlorothiazide)
- ▶ 푸로세마이드(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메틸헥산아민(methylhexaneamine, dimethylpentylamine))
- ▶ 메틸에페드린(methylephedrine)
- ▶ 에페드린(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1) 대사물질 :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4. 마약류 : 총 11종

- ▶ 부프레노르핀 (Buprenorphine)
- ▶ 덱스트로모라미드 (dextromoramide)
- ▶ 헤로인 (diamorphine, heroin)
- ▶ 펜타닐 (fentanyl) 및 유도체
- ▶ 히드로모르폰 (hydromorphone)
- ▶ 메타돈 (methadone)
- ▶ 모르핀 (morphine)
- ▶ 옥시코돈 (oxycodone)
- ▶ 옥시몰론 (oxymorphone)
- ▶ 펜타조신 (pentazocine)
- ▶ 페티딘 (pethidine)

②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붙임6

자진신고시스템 운영 안내문

-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 -
자진신고시스템 운영 안내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본인)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별도 시험을 시행을 안내하고자 함.

■ (대 상) 2021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통지를 받아 본인 응시 예정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신청기간) 본인 응시 예정일 전일 24시까지

※ 별도 시험 준비 등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최소한으로 한정함.

※ 응시 예정일 전일 24시까지 응시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응시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응시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① 전북도청 공무원채용팀으로 유선(063-280-2307) 통보

② 첨부서류 제출(팩스 또는 메일)

■ (첨부서류)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서식 3, 4)

◆ 메 일 : shyguy963@korea.kr

◆ 팩 스 : ☎ 063-280-2919

■ (시험 안내) 시험응시 신청자에게 장소 및 일정 개별 유선 통보(시험 예정일 前)

■ (유의사항)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방역수준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 의거

붙임7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2021년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출입이 가능하며,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 시험장 내에서는 응시자간 안전거리 최소1.5m이상 유지하기
- 모든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해야함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해야함 (오전조 8:00분 / 오후조 13:00부터 시험장 출입 가능)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해당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
-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 지키기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리기
- 감염방지를 위해 시험장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휴지, 덧신 등)는 본인의 가방 등에 넣어 직접 가져가기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연세대학교병원 응급실의 복은
관할의료소 또는 가평의료소+120, 1339 등



감염병의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2. 체력시험 제출서식

도핑테스트 실시 동의서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위 본인은 2021년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서식2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해당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 _____ 2. 성별 : 여 ☐ 남 ☐
 3. 생년월일 : _____ 4. 응시번호 : _____
 5. 핸드폰 : _____ 6. 이메일 :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응급 ☐

기간(주/월) 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 _____ 전공분야 : _____
 주소 : _____
 전화 : _____ 팩스 : _____ 이메일 : _____
 서명 : _____ 날짜 :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 _____ 날짜 :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 _____ 날짜 :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제출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서식3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해당자)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	응시번호	
현 주소지			
격리 기간		관할 보건소	

☐ 제출 서류

※ 서류 제출현황 (제출시 ☐에 ‘V’ 체크)

- ① 시험응시 신청서 ☐ (공통)
-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공통)
- ③ 격리통지서 사본 ☐ (자가격리자용)
- 또는 필기시험 응시가능 의사 소견서 ☐ (확진자용)

상기 본인은

2021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별도 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3. 코로나19 관련 참고사항

참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



질병관리본부
KCDC

Use and the more the better

해외감염병 NOW

1339

보건복지부 콜센터



질병관리본부
www.kdca.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통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지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 웹사이트 ncov.mohw.go.kr](https://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5

참고 2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1 손바닥



2 손등



3 손가락 사이



4 두 손 모아



5 엄지 손가락



6 손등 밑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1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2 옷 소매로
가리기



3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발행일 2019.11.5.

참고 3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7-4판 기준

□ 사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관련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 (2020.3.4. 시행)

참고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묻고 답하기

Q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통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CoV와 SA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공개된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또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지게 되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Q4.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어 증상에 따른 처치가 이루어집니다.
-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6.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